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19

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김위상・우재준・최수진

김선교 • 조경태 • 임이자

김기웅 · 김형동 · 정동만

박충권 · 김대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·양수하려는 때에는 양도·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'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'라는 문구는 단순 감기부터 모든 질병에 걸린 멸종위기종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'해당 종이 죽거나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'로 수정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환경부장관 신고의무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6항).

법률 제 호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6항 본문 중 "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"을 "해당 종이 죽거나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	제16조(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
제거래 등의 규제) ① ~ ⑤	제거래 등의 규제) ① ~ ⑤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⑥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	6
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	
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・양수	
(사육·재배 장소의 이동을 포	
함한다. 이하 같다)하려는 때에	
는 양도·양수 전까지, <u>해당 종</u>	<u>해당 종이</u>
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	죽거나 폐사에 이를 수 있는
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	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
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	<u>되었을 때에는</u>
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	
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경부장관	
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	
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	
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	
위기종은 제외한다.	
⑦・⑧ (생 략)	⑦·⑧ (현행과 같음)